BNIK 부산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-1346 (심의일자: 2025.06.24)

유효기간: 2025.07.01~2026.06.30



외화보통에금 상품설명서

- ▶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▶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▶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▶ 상품명 : 외화보통예금

▶ 상품특징 :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.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</u> <u>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</u>에 따릅니다.

(2025.06.17 현재, 단위 : 연, 세전)

구 분	내용		
가입대상	■ 제한없음		
상품유형	■ 외화보통예금		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, 모바일뱅킹 ■ 해지 : 영업점, 모바일뱅킹		
이자지급시기	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첫째 일요일(기준일)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함 ※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,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		
가입통화	■ 미국달러화(USD), 일본엔화(JPY), 유로화(EUR), 영국파운드화(GBP), 스위스프랑화(CHF), 캐나다달러화(CAD), 호주달러화(AUD),중국위안화(CNY)		

	■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			
계좌당 거래가능통화	•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(단, 복수통화계좌에 한함)			
기본이율	■ 연 0.01% (USD, 거주자) ■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			
이자산출근거	■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/ 통화별 연간일수[일본엔화(JPY) 와 영국파운드화(GBP)는 365일, 그 외 통화는 360일] ■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		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
세제혜택	불가	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		
양도 및 담보제공	불가	■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		
계약해지방법	■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			
자료열람 요구권	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		
위법계약해지권	 □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) 			
휴면예금 및 출연	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 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pney.or.kr)를 통해조회 가능합니다. 			
연계•제휴 서비스 내용	■ 해당사항 없음			

3 유의 사항

- ▶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(신규입금 포함)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(송금 보내실 때 환율)을 적용합니다.
- ▶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(송금 받으실 때 환율)로 합니다.
- ▶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
- ▶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6200, 1544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;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내 용		
압 류	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		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		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		
출 연	 ●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●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 		
경과기간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		

문의사항	영업점	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참조
및	고객센터	1544-6200/1588-6200
민원상담	인터넷 홈페이지	www.busanbank.co.kr
ᆸ재ᄌ저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
분쟁조정 	e-금융민원센터	www.fcsc.kr
상품 개발부서	외환사업부	051-661-4654

BNIK 부산은행

WWW